

양조연구소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부설 양조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양조분야를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와인 양조를 위한 원료, 제조공정, 미생물 연구
2. 막걸리 등 전통주의 공정개선 및 상품화
3. 브랜드, 고구마 소주 등 증류주 제조
4. 주류 분석, 정보, 표준화 기반 조성
5. 전문 양조 인력 양성 및 소믈리에 교육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5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사무직원과 조교) ① 연구소에 사무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 삭제 <2013.7.1.>

제8조 삭제 <2013.7.1.>

제9조 삭제 <2013.7.1.>

제10조(예산 및 회계)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11조 삭제 <2013.7.1.>

제12조 삭제 <2013.7.1.>

제12조의2(와인농장) 와인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와인 농장장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3.7.1.>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